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00
----------	------

제출년월일 : 2016.02.2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외국인 관련 사무, 청소년·교육 지원 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 가능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구 간 상호 연계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외국인 전담 사업소 「다문화지원본부」를 신설함.(안 제2조, 제18조, 제20조)
 - 외국인주민센터(5급 사업소) → 다문화지원본부(4급 사업소)
 - 다문화지원본부 内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신설
- 「투자유치과」를 「마이스산업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 안전행정국장 분장 사무 중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7조, 제8조)
 - 국제협력 사무 이관(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기획경제국 마이스산업과)
- 문화예술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과」를 재편함.(안 제9조)
- 국 간 업무량 균형을 위해 「체육진흥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재편함.(안 제7조, 제9조)
- 환경 분야 업무와의 효율적 연계 추진을 위해 「녹색에너지과」를 「환경교통국」에 재편하고, 「환경교통국」을 「환경에너지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6조, 제8조, 제11조)
- 노동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재편함.(안 제8조, 제20조)
 -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 다음)
- 도시디자인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재편함.(안 제10조)
- 폐기물 처리, 재활용사업 등 자원순환 업무가 중요시됨에 따라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함.(안 제11조)
- 「공단환경과」를 「산단환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20조)

-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 관련 업무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스마트허브”를 “국가산업단지”로 변경(안 제20조)
- 배출시설 관리권 수임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20조)
- 여성비전센터를 ‘과’에서 ‘계’로 재편하고 평생교육과 내에 편재하여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과」로 명칭 변경하고, 청소년 및 교육지원 업무를 신설된 「교육 청소년과」로 이관(안 제20조)
- 기구조정 내용(요약)
 - 4급 기구 조정(신설 1, 명칭변경 1)
 - ▶ 다문화지원본부(4급 사업소) 신설
 - ▶ 「환경교통국」 → 「환경에너지교통국」
 - 5급 기구 조정(신설 3, 폐지 2, 국 재편 3, 명칭변경 4)
 - ▶ 다문화지원본부 内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신설
 - ▶ 평생학습원 内 교육청소년과 신설
 - ▶ 여성비전센터 : 과(5급) → 계(6급)
 - ▶ 외국인주민센터(5급 사업소) 폐지
 - ▶ 녹색에너지과 국 재편 : 기획경제국 → 환경에너지교통국
 - ▶ 체육진흥과 국 재편 : 복지문화국 → 안전행정국
 - ▶ 일자리정책과 국 재편 : 산업지원본부 → 기획경제국
 - ▶ 명칭변경 :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공단환경과 → 산단환경과, 평생교육과 → 평생학습과, 투자유치과 → 마이스산업과

개정조례안 : 볼임1

신·구조문대비표 : 볼임2

관계법령발췌서 : 볼임3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의견있음-반영 2건, 미반영 1건)

- 입법예고 : 2016. 1. 27. ~ 2. 16.(20일간)
- 제출의견
 - 투자유치과 명칭변경(투자유치과 ⇒ 마이스산업과)
⇒ 마이스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과 업무와 성격에 맞게 명칭변경을 반영함.
 - 문화예술과 국 내 부서순위 상향 조정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국 내 부서순위를 상향하여 반영함.
 -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과 내 편제에 대한 의견
⇒ 경기도 시군 대부분 계 단위 조직으로 여성비전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미반영함.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4
- 방침결정문 : 붙임5

< 불임 1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외국인주민센터”를 “다문화지원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국”을 “환경에너지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여권과, 체육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선거 및 투표, 국제협력”을 “선거 및 투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를 “마이스산업과”로 하고, “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생명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투자사업”을 “투자사업, 국제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자리정책,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 보육정책과 · 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를 “복지정책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종전의 제7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교통국에 두는 과”를 “환경에너지교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에너지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국장”을 “환경에너지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중 “외국인주민센터”를 “다문화지원본부”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정책과”로, “공단환경과”를 “산단환경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스마트허브”를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스마트허브”를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반월국가산업단지 4종 및 5종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로,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을 “관산도서관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생학습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교 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을 “다문화지원본부에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를 두며, 본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를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외국인주민센터”를 “다문화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환경교통국”을 “환경에너지교통국”으로 한다.

②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산시여성비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센터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소관 실·과		총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최종은
	계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계장 허진
	담당자 성명·전화	홍인표 (행정 3108)

〈별 지〉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해양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대선동 31(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
	이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사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사동)
	본오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본오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초지동)
	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고잔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본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원곡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동)
	원곡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1 (원곡동)
	초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 (초지동)
	선부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 (선부동)
	선부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 (선부동)
	선부3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47 (선부동)
	대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7-9 (대부북동)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일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일원	
안산시 원곡보건지소	안산시 일원(외국인근로자)	
안산시 대부보건지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안산시 반월도시보건지소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일원	
안산시 안산동보건지소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일원	
안산시 대부남동보건진료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생략)</p> <p>1. (생략)</p> <p>2. 사업소 :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u>외국인주민센터</u>,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p> <p>3. (생략)</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다문화지원본부</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도시주택국 및 <u>환경교통국</u>을 둔다.</p>	<p>제6조(국의 설치) ----- ----- ----- <u>환경에너지교통국</u> -----.</p>
<p>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사회지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u>민원여권과</u>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자치행정, <u>선거 및 투표</u>, 국제협력,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p> <p>4. ~ 5. (생략)</p> <p><신설></p> <p>6. 정보화, 정보보호, 통신에 관한 사항</p>	<p>제7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p> <p>① ----- -----, <u>민원여권과</u>, <u>체육진흥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선거 및 투표</u>, -----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p> <p>① 기획경제국에 기획법무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u>생명산업과 및 녹색에너지과</u>를 둔다.</p> <p>② (생 략)</p> <p>1. ~ 3. (생 략)</p> <p>4. 기업유치, 투자유치, <u>투자사업</u>, 마이스산업 등에 관한 사항</p> <p>5. (생 략)</p> <p>〈신 설〉</p> <p>6. 농업기반시설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p> <p>7. <u>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제8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p> <p>① ----- <u>-마이스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및 생명산업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투자사업, 국제협력, -----</u></p> <p>5. (현행과 같음)</p> <p>6. 일자리정책,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삭 제〉</p>
<p>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p> <p>① 복지문화국에는 <u>복지정책과·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u>를 둔다.</p> <p>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 략)</p> <p>7. <u>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u></p> <p>8. <u>식품안전·유통,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u></p>	<p>제9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p> <p>① ----- <u>복지정책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u></p> <p>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7.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0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p> <p>① 도시주택국에는 <u>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디자인과</u>를 둔다.</p>	<p>제10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p> <p>① ----- <u>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 -----.</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6. (생 략)</p> <p>7.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도시정책 및 위원회 운영, 도시경관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p> <p>3. ~ 7. (현행 제2호 ~ 제6호와 같음)</p> <p><u><삭 제></u></p>
<p>제11조(환경교통국에 두는 과)</p> <p>① 환경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녹지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p> <p>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6. (생 략)</p>	<p>제11조(환경에너지교통국에 두는 과)</p> <p>① 환경에너지교통국에는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및 대중교통과를 둔다.</p> <p>② 환경에너지교통국장-----.</p> <p>1. (현행과 같음)</p> <p>2.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지원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3. ~ 7. (현행 제2호 ~ 제6호와 같음)</p>
<p>제18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외국인주민센터,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둔다.</p>	<p>제18조(설치) -----</p> <p>-----</p> <p>-----</p> <p>----- 다문화지원본부, -----</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산업지원본부에는 <u>산업정책과</u>, <u>일자리정책과</u>, <u>기업지원과</u>, <u>공단환경과</u>를 두며,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 라. (생 략)</p> <p>마. <u>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바. (생 략)</p> <p>사. 건축민원 등 <u>스마트허브</u> 관련 인·허가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p> <p>아. <u>근로자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u></p> <p>자. <u>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차. (생 략)</p> <p><u><신 설></u></p> <p>카. (생 략)</p> <p>타. (생 략)</p> <p>3. 평생학습원에는 <u>평생교육과</u>,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u>관산도서관</u>, <u>여성비전센터</u>를 두며,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가. <u>평생학습,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나. ~ 라. (생 략)</p>	<p>제20조(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산업정책과</u>, ----- ----- <u>산단환경과</u>-----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삭 제></p> <p>바. (현행과 같음)</p> <p>사. ----- <u>국가산업단지</u> ----- -----.</p> <p>아. <삭 제></p> <p>자. <u>국가산업단지</u> ----- -----.</p> <p>차. (현행과 같음)</p> <p>카. <u>반월국가산업단지 4종 및 5종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u></p> <p>타. (현행 카목과 같음)</p> <p>파. (현행 타목과 같음)</p> <p>3. ----- <u>평생학습과</u>, <u>교육청소년과</u>, ----- -----, <u>관산도서관</u>을 -----.</p> <p>가. <u>평생학습 및 여성비전센터 운영</u>----- -----.</p> <p>나. <u>학교 교육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u></p> <p>다. ~ 마. (현행 나목 ~ 라목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마. <u>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u></p> <p>4. (생 략)</p> <p>5. <u>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p> <p>가. <u>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나. ~ 라. (생 략)</p> <p>6. ~ 8. (생 략)</p>	<p>마. <삭 제></p> <p>4. (현행과 같음)</p> <p>5. <u>다문화지원본부에는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를 두며, 본부장-----</u></p> <p>-----.</p> <p>가. <u>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u></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6.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해양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312 (이동)
기 관 명	소 재 지
안산시청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22 (사동)
안산시 해양관광본부	안산시 단원구 대선동 31(대부북동)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원시동)
안산시 평생학습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고잔동)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원곡동)
안산시 U-정보센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200 (사동)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선부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312 (이동)

현

행

개정안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
	이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사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사동)
	본오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본오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65 (초지동)
	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고잔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회정천동로 22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관명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청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 (일동)
	이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 46 (이동)
	사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 (사동)
	사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사동)
	본오1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 (본오동)
	본오2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동)
	본오3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동)
	부곡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동)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 (부곡동)
	성포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68 (성포동)
	반월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건건동)
	안산동 주민센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15 (수암동)
	단원구청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65 (초지동)
	와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3 (와동)
	고잔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회정천동로 222 (고잔동)
	고잔2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고잔동)
	호수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고잔동)
	원곡1동 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현 행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안산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상록구 일원	
안산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단원구 일원	
안산시	안산시 일원	
원곡보건지소	(외국인근로자)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보건지소	대부동 일원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반월도시보건지소	반월동 일원	
<신 설>	<신 설>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보건진료소	대부남동 일원	

개 정 안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3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비 고
안산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상록구 일원	
안산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단원구 일원	
안산시	안산시 일원	
원곡보건지소	(외국인근로자)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보건지소	대부동 일원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반월도시보건지소	반월동 일원	
<u>안산시</u>	<u>안산시 상록구</u>	
<u>안산동보건지소</u>	<u>안산동 일원</u>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보건진료소	대부남동 일원	